

#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규정

## 제1장 목 적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하며 신입생 모집 선발과정에 관한 제반사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위원을 배제한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(사무처장) 1인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 (위원회의 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감독한다.

1. 대학의 입시 부정방지 대책의 수립 및 시행
2. 입학전형 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·통제
3. 입학전형 관리의 공정성과 정확성 여부 확인
4.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심사
5. 기타 특기사항 제언

제4조 (회의) ① 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.

제5조 (시행)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며, 재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